

02

신뢰는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균형에서 싹튼다

이춘재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1. 가세연이 던진
소셜미디어
규제 논란

‘충격단독, 영입인재 1호 혼외자 폭로’

2021년 11월 3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30대 ‘워킹맘’이자 우주·군사 산업 전문가로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에 영입된 ㄱ씨의 혼외자 의혹을 제기했다. ㄱ씨가 현역 장교인 전 남편과 결혼 생활 중에 다른 남성과의 불륜 관계로 혼외자를 낳았고, 이를 부부의 아이로 속이고 있다가 유전자 검사 결과 사실이 드러나자 이혼을 청구한 남편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주고 이혼했다는 내용이였다. ㄱ씨는 의혹이 제기된 지 3일 만에 공동선대위원장에서 사퇴했다. ㄱ씨의 사퇴로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던 이 사건은 사퇴 3일 후 ㄱ씨가 ‘성폭력으로 원치 않는 임신 하게 됐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부단장인 양아무개 변호사는 <○○ 전 선대위원장의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ㄱ씨의 혼외자는 불륜 관계가 아니라 ‘제3자의 끔찍한 성폭력’에 의한 임신이었으며, ㄱ씨는 생명을 죽일 수는 없다는 종교적 신념으로 출산을 했다”고 밝혔다.¹⁾ 가세연의 ‘불륜 관계에 의한 혼외자’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었다. 가세연은 ㄱ씨의 입장문 공개 이후에도 ‘○○○시리즈’를 준비한다며 사생활 캐기를 중단하지 않았다. 가세연의 김세의 대표는 ㄱ씨 의혹을 다룬 책을 출간하겠다고 공언했다.

가세연은 언론 단체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가세연 방치하는 유튜브에 사회적 책임을 묻는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자녀 이름·얼굴까지 공개하는 무분별한 사생활 침해에 ㄱ씨는 성폭행 피해 사실을 밝히며 가족을 향한 공격을 멈춰달라고 호소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중략) 가세연 콘텐츠는 명백한 인권침해, 명예훼손, 정치적 입장에 따른 증오표현”이라며 유튜브 쪽에 가세연 채널 폐쇄를 요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도 가세연이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저속한 언어 정책’,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정책’, 잘못된 정보 조항을 위반했다며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쪽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²⁾

가세연의 ㄱ씨 관련 라이브 영상 조회수는 60만회를 넘겼고, 라이브 방송 도중 받은 슈퍼챗으로 일주일(11월 29일~12월 5일) 동안 1,600여만 원의 수익을 거뒀다. 가세연은 이 기간 동안 국내 유튜브 슈퍼챗 순위 1위에 올랐다. 이

1) 윤김나영 (2021. 12. 5). ㄱ씨 측 “성폭력으로 원치 않는 임신”. <경향신문 인터넷판>.

2) 정세인 (2022. 1. 20). 구글코리아 본사 앞에 선 언론인들, “가세연 방치 사회적 책임져야”. <PD저널>. URL: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73400>

수익의 30~40% 가량은 수수료 명목으로 유튜브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알려졌다.³⁾ 가세연 뿐만 아니라 이를 인용 보도한 기성언론들의 보도 행태도 도마에 올랐다. 가세연의 폭로에 이어 중편을 비롯한 일부 기성언론들의 경마식 보도가 이어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말장난 낚시를 던져 ‘돈 쓰는 독자들’께는 데 혈안인 몇몇 개인 매체의 주장에 기댄 보도는 당장 멈춰야 한다”고 규탄했다.

가세연 사태는 유튜브를 비롯한 소셜미디어⁴⁾ 와 관련해 중요한 질문들을 던졌다. ‘소셜미디어에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되는가’, ‘소셜미디어에 인격권 침해(명예훼손)의 책임은 어디까지 물을 것인가’, ‘소셜미디어에 대한 규제는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논쟁적인 질문들이다. 가세연의 행태는 분명 표현의 자유 영역을 뛰어넘은 것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 그에 따른 법적 책임도 당연히 물어야 한다. 하지만 소셜미디어에 대한 규제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규제 만능주의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2. 인격권 침해 vs 표현의 자유

‘가세연 논란’은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과 기본 구조가 같다. 가세연은 언론사가 아닌 통신판매업체로 등록돼 있지만 실제로는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가세연처럼 언론을 지향하는 유튜브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소셜미디어를 언론과 구분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소셜미디어의 사회적 기능과 영향력은 언론에 못지않기 때문이다. 인터넷의 확장으로 소셜미디어는 대중화 단계를 넘어선지 이미 오래다. 2018년 인터넷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이용자(만 1살 이상)의 65.2%가 SNS(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 91.9%, 30대 84.9%, 40대 74.5%, 6~19살 59.4%였다. 만 6살 이상 SNS 이용자의 주평균 이용 빈도는 22.0회(하루 평균 3.1회)였다. 주 평균 SNS 이용시간은 53분으로 조사됐다. 이는 날이 갈수록 열독률과 영향력이 쇠퇴하고 있는 신문과 대조적이다.

3) 손가영 (2022. 1. 20). “가세연” 슈퍼챗 수수료 받는 유튜브, 책임감이 없다. <오마이뉴스>. URL: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04289

4) 황용석(건국대) 교수는 <SNS와 언론보도>(2011)에서 “중종 소셜미디어와 SNS가 혼용돼 사용되고 있다”면서, “다양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소셜미디어의 개념을 손쉽게 정의하고자 한다면 ‘이용자간의 관계망을 통해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보와 지식을 생산, 공유, 소비하는 서비스로 정리할 수 있다’고 했다. 소셜미디어는 SNS와 유튜브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설명이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회적 의견과 정보가 교환되는 속도와 규모는 기존 언론을 뛰어넘는다.⁵⁾ 2월 24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대표적이다. 2003년 이라크전쟁이 <CNN>의 긴급 뉴스 타전으로 시작됐다면, 이번 전쟁은 구글 지도에서 시작됐다.⁶⁾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국경도시 벨고로드(Belgorod)로 진입하는 도로가 이날 새벽 3시 무렵부터 구글 지도에서 붉은색으로 변해갔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모바일폰 사용자를 자동 추적해 교통량 지표로 활용하고 있는데, 러시아 탱크와 군용차들이 국경을 넘어오자 현지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자동차를 타고 몰려들면서 구글 지도에 도로 혼잡 신호가 뜬 것이다. 구글맵이 세계 유수의 언론사들을 제치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시작을 처음으로 보도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의 건재함을 전 세계에 알린 것도 소셜미디어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틀 후 새벽 텔레그램을 통해 공개된 동영상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정부 청사를 배경으로 자신과 주요 각료들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었다. 이 동영상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항전 의지를 불태웠고, 전 세계 민주 진영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이끌었다. 소셜미디어는 폐허가 된 도시 속에서 러시아 침공에 맞서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모습 등을 생생하게 전달하면서 반전 여론을 주도했다.

5) 황용석 (2011). SNS와 언론보도. 2011년 정책심포지엄. <언론중재위원회>.

6) 유민호 (2022. 3. 7). 우크라이나, 새로운 전쟁의 시작... SNS 전쟁을 공유하다. <주간조선> 2698호. URL: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698100001&ctcd=C07>

이는 기존 언론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소셜미디어의 강점이다. 이런 점에서 소셜미디어의 기능과 영향력은 이미 언론을 능가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언론에 주어지는 권리와 책임을 소셜미디어에 동등하게 적용하는 것은 전혀 무리가 없다. 물론 소셜미디어의 사실 확인 및 검증 체계에는 한계가 있다. 황용석 교수(건국대)는 “SNS 상의 검증은 장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사실을 확인해줄 판정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사안의 긴급성을 띠는 소식의 경우 검증은 뒷전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시간적·기술적 한계를 강조했다(2011년). 하지만 이런 한계가 소셜미디어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어 보인다.

‘가세연 논란’의 쟁점은 인격권 침해와 표현의 자유의 충돌이다. 두 권리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성격을 지닌다. 어느 한쪽의 권리가 강조되면 다른 쪽은 침해된다. 권리를 주장하는 쪽과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쪽은 제3자의 개입 없이 화해나 타협이 어려울 정도로 배타적이다. 문제는 인격권 보호의 개념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고 사적인 비밀을 함부로 공개당하지 않는 소극적 권리로 이해됐지만, 지금은 적극적으로 자신에 관한 정보를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확장되고 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는 그에 비례해서 축소되고 있는 것이다.

인격권 보호의 확장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대법원은 1990년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사찰 사건⁷⁾에서 ‘자기 정보의 자율적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관한 헌법 제10조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헌법 제17조는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는 판례를 남겼다.⁸⁾ 하지만 이때만 해도 ‘자기 정보의 자율 통제’는 국가 기관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저항권 성격이 강했다.

실질적인 자기 정보의 자기 통제권은 인터넷의 대중화와 함께 구체화됐다. 인

터넷은 개인정보 공개의 피해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시켰다. 인격권 침해의 정도가 심해진 만큼 인격권 보호의 영역도 더욱 확장될 수밖에 없었다. 지난 2014년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가입 교사 실명 공개 사건에서 내린 판단은 이를 잘 보여준다. 대법원은 당시 여당 국회의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가입 교사의 실명을 인터넷에 공개한 사건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기준으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했다. 전교조 가입 정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제3자가 자기 마음대로 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행위는 해당 교사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했다. 그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영역도 크게 확장했다.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국회의원 등은 전교조 가입 교사 실명 공개를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생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전교조 가입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알



7) 1990년 10월 국군보안사령부(현 기무사령부)에서 복무하던 윤석양 이병이 보안사가 정치계·노동계·종교계·재야 등 각계 주요 인사와 민간인 1,303명을 상대로 정치사찰을 벌인 사실을 폭로했다. 사찰 대상이던 노무현·한승헌·김승훈·문동환·이호재 등 145명은 1991년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8)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외부에 널리 공표할 필요성까지 있다고 볼 수 없고, 특히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게시된 정보가 순식간에 광범위하게 전파됨으로써 그로 인해 중대한 법익 침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개한 법적 이익이 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원고들의 법적 이익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⁹⁾

개인 정보의 공개 여부는 전적으로 정보 주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이 판례는 인격권 보호의 영역을 한 단계 더 확장하는 계기가 됐다. 정보를 공개할 때는 물론 이미 공개된 정보의 처분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확대된 것이다. 인터넷에 저장돼 있는 자기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가 대표적이다. 잊혀질 권리는 2014년 유럽연합 사법재판소가 구글 검색엔진에 노출된 한 시민의 개인정보를 삭제하라고 한 판결을 통해 공식화됐다. 스페인의 한 남성이 구글의 검색 결과에 링크된 자신의 과거 부채 기록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소송에서 남성의 손을 들어 준 판결이다. 구글은 제3자가 개인정보를 복제하거나 인용해서 발행한 콘텐츠

에 대해서는 삭제를 할 수 없다고 버텼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잊혀질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침해의 대립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개념이다.¹⁰⁾ 이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인터넷의 확장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인간의 기억을 보조하는 도구가 된 세상에서는 잊기 위해 별도로 노력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기록되고 언제 어디서나 호출된다. 이처럼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나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는 정보를 언제든지 삭제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의 대립적 관계는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두드러진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인격권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확장돼 왔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두 권리의 충돌이 더욱 자주 발생하고 강도는 더욱 세어지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격권의 확장이 표현의 자유의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법원이 인격권 침해, 즉 명예훼손의 민·형사 책임을 다룰 때 ‘위법성 조각사유’를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해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위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¹¹⁾ 라고 설명했다. 공익성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비록 인격권을 침해했다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언론 보도의 공익이 인격권 침해의 사익보다 크다면 표현의 자유를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위법성 조각사유의 경계는 칼로 무를 자르듯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는다. 사회 구조가 다층적이고 복잡해지면서 공공과 개인의 영역, 공인과 사인의 경계를 구분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공직에 있는 사람을 가리켰던 공인(公人)은 지금 ‘사회에 널리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의미가 확대됐다. 그러나 무엇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그러다보니 공익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진영논리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까지 벌어진다. 한쪽에서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범죄행위로 비난받는 보도가

9)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10) 구분권 (2016). <나에 관한 기억을 지우라>. 서울: 풀빛.

11)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등

3. 인격권 확장의 합성, 언론중재 법 개정안 논 란

다른 한쪽에선 공인에 대한 도덕성 검증 차원의 보도로 평가받는다. 과거에는 훌륭한 인사검증 보도로 칭찬받던 기사가 정치적 상황이 바뀐 뒤 정략적 의도를 가진 보도로 폄하되기도 한다.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의 균형이 정치적 역학관계와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2021년 여름 언론계를 들쭉서놓은 언론중재법 개정안¹²⁾ 논란은 진영논리에 따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다. '가짜뉴스(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옹호하는 쪽은 표현의 자유를 악용한 언론의 횡포를 강조했다. 반면 반대하는 쪽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짜뉴스를 막기보다 정당한 보도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크다고 반박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가짜뉴스는 △허위 사실을 보도한 경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경우를 가리킨다. 그런데 이 규정에 따르면 2005년 삼성 엑스(X)파일 사건¹³⁾ 이나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처럼 보도 당시에 사실관계가 온전히 드러나지 않은 보도들은 언제든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언론단체들이 “자의적 해석과 오남용으로 비판적인 언론을 질식하게 할 수 있다”고 반발한 이유다.¹⁴⁾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가짜뉴스에 대한 판단이 진영논리에 따라 달라졌다는 점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여권은 과거 엑스파일, 국정농단 관련 보도를 훌륭한 보도라고 추켜세웠다. 반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야권은 이 사건들이 처음 보도됐을 때 ‘허위·조작 보도’라고 깎아내렸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쪽은 “언론중재위로 가든 소송으로 가든 최소 두 달 이상은 걸리는데 그 기간에 잘못된 보도로 개인이 입는 손해가 막대하다. 피해자의 권리는 최대한 늘리되 남용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찾으려면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단 법으로 만들어지면 ‘남용 가능성’을 줄이

12)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2021년 7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뒤 8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야당인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면서 처리는 9월로 넘어가게 됐다. 이후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처리하기로 했으나 특위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사실상 처리가 무산됐다.

13) 인기부의 도청 녹취록 ‘엑스파일’ 내용이 2005년 (MBC)의 보도로 세상에 공개됐다. 엑스파일에는 1997년 15대 대선을 앞두고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사장이 불법 대선 자금 제공, 고위 검사들에 대한 금품로비 등을 논의하는 대화가 담겨 있었다.

14) 신지민 (2021. 8. 20). 언론중재법 개정안, 뭐가 문제일까? <한겨레21> 1377호. URL: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795.html



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특히 정치인과 고위 관료, 기업인들처럼 부와 권력을 가진 쪽은 법에 보장된 권리를 악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언론의 비판 기능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2016년 현직 감사장의 ‘공짜 주식 대박’ 사건은 만약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했다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사건의 대표적 사례다. 그해 3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때 한 현직 감사장이 156억여 원의 재산을 신고해 법원과 검찰을 통틀어 재산 랭킹 1위에 올랐다. 일선 검사 시절 비상장주식인 게임회사 넥슨의 주식 80만여 주를 매수한 뒤 10여년 후 감사장 승진을 앞두고 이를 처분해 120억여 원을 벌어들인 것이다. 현직 감사가 뭇돈으로 비상장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여 100억대의 수익을 낸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서 주식 취득 과정과 자금 출처에 대한 언론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¹⁵⁾ 그러자 그의 투자가 현행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감사는 물론 그가 몸담고 있는 검찰의 거센 항의가 빚발쳤다. 기사를 쓴 기자와 해당 언론사에 반론 및 정정보도는 물론이고 손해배상 소송까지 내겠다는 협박(!)이 이어졌다.

그러나 3개월 뒤 그는 오랜 친구사이인 게임회사 창업주에게 공짜로 주식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현직 감사장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검찰에 구속되는 수

15) 최현준 (2016. 3. 28). [단독] 진경준 감사장 '수상한 38억 주식 대박'. <한겨레>. URL: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7119.html



모를 겪었다. 검찰은 그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했으나 대법원에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이후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가장 잘 보여준 사건으로 남게 됐다. 만약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논의됐던 열람 차단청구권이 당시 있었다면 이 사건의 진실은 빛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인 징벌적 손해배상은 언론의 신중한 보도 태도와 책임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분명 있다. 하지만 언론의 진실을 파헤치려는 의지를 약화시키는 부작용도 뒤따른다. 특히 권력형 비리 사건의 추적 보도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일선 기자가 막대한 소송비용과 장기간 소요되는 시간을 부담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장기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자의 후속 보도 의지는 약해지기 마련이다. 권력과 부를 가진 쪽은 이를 노리고 소송을 남발할 것이다.

인격권 확장의 최대 수혜자가 부유층이나 권력층이 되는 현상은 이미 벌어지고 있다. 영국 대법원은 최근 한 미국 기업인의 비리에 대한 영국 수사기관의 수사 착수 사실을 보도한 <블룸버그>에 거액의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이를 “언론의 자유에 재갈을 물린 판결”이라고 소개했다.¹⁶⁾ 사건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블룸버그는 당시

¹⁶⁾ The Economist (2022, 2, 19). British privacy law now rivals libel law in gagging the press. <The Economist>. URL: <https://www.economist.com/britain/2022/02/19/british-privacy-law-now-rivals-libel-law-in-gagging-the-press>

영국의 수사기관이 한 미국 기업의 영국 파트너사에 이메일을 보내 해당 기업인의 개인 정보를 요청한 사실을 확인한 뒤 이를 기사로 썼다. 그 기업인이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보도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그 기업인은 수사가 종결된 후 자신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소송을 냈고, 영국 대법원은 2022년 2월 블룸버그가 그 기업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고 최종 판결한 것이다. 심지어 블룸버그는 그 기업인의 실명을 쓰지 않았음에도(ZXC라는 가명으로 보도) 영국 대법원은 2만 5,000 파운드(약 4천만 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은 가명으로 보도했음지라도 그의 인격에 입힌 손해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경험적으로 볼 때 그 피해는 확고할 뿐 아니라 치유되지도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법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피의자도 기소되기 전까지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주장할 수 있게 됐다고 영국 언론들은 지적했다. 기소되기 전 보도된 기사에 대해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언론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블룸버그는 자사 웹사이트에 “이번 판결이 기업의 위법 행위에 대한 보도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반박글을 올렸다. 부자나 권력자는 수사와 재판을 질질 끌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더라도 언론에 공개되는 것을 피할 수 있고 자신의 정체를 쉽게 숨길 수 있다. 이는 형사처벌을 통한 정의의 실현을 방해한다. 기업 범죄는 내부자의 수사 협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데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수사는 이런 협조를 기대하기 힘들다. 언론의 관심과 견제는 수사기관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유인한다. 또 성폭행이나 아동학대와 같은 범죄는 피의자의 이름이 언론에 보도될 때 더 많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피해 사실을 신고한다. 기소될 때까지 이름을 공개하지 말도록 하는 것은 추가 범죄를 은폐시킬 우려가 크다.

4. 소셜미디어의 자기검열과 표현의 자유

권력층과 부유층이 인격권 확장의 최대 수혜자가 되는 것은 민주주의에 닮은 새로운 도전이다. 이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을 막기 위해 소셜미디어 기업들을 압박한다. 안타깝게도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과거 독재 정권의 압박에 저항했던(지금도 저항하고 있는) 언론인이나 언론사가 걸었던 고난의 행군 대신 타협의 길을 택하고 있다.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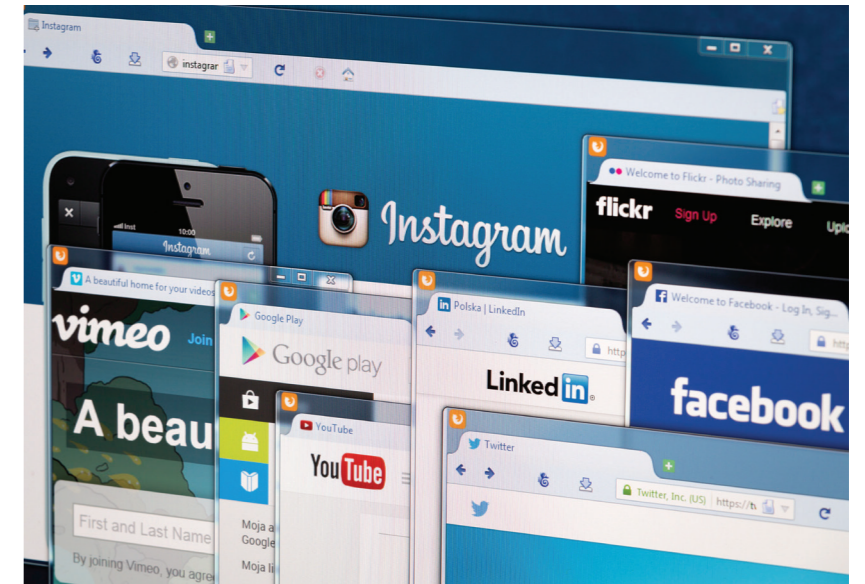
¹⁷⁾ The Economist (2020, 10, 22). Social media's struggle with self-censorship. <The Economist>. URL: <https://www.economist.com/briefing/2020/10/22/social-medias-struggle-with-self-censorship>

제46대 미국 대통령선거가 한창이던 2020년 10월 14일 트위터는 〈뉴욕포스트〉가 당시 바이든 민주당 후보 아들의 비리 의혹에 대해 쓴 기사를 퍼나르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 기사가 유해 콘텐츠로 분류됐다는 게 이유였다. 페이스북 가입자들은 아예 이 기사를 볼 수 없었다. 페이스북의 팩트체커가 이를 검사하는 동안 이 콘텐츠의 노출을 막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기사는 당시 한주 동안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토론된 콘텐츠였다. 〈이코노미스트〉는 “과거 어두운 방에서 체제 반대자를 고문했던 독재자를 대신해 지금 실리콘밸리의 쯤쟁이들이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가입자가 콘텐츠를 올릴 때 별다른 간섭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이 알고리즘을 통해 가입자의 글에 순위를 매기거나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콘텐츠를 삭제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문제는 어떤 콘텐츠가 허용되고 누가 그것을 결정하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코로나 백신 음모론’과 같은 가짜뉴스를 삭제하는 것은 당연한 조처다. 하지만 그 경계가 모호한 콘텐츠가 점점 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유튜브는 과거 시리아군의 만행을 찍은 동영상들 ‘폭력 수위가 높다’는 이유로 삭제했는데, 이 동영상들은 전쟁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이었다. 소셜미디어의 가이드라인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중국 소셜미디어 톱톡은 중국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천안문 사태와 같은 콘텐츠를 ‘역사왜곡’이라는 이유로 금지한다. 톱톡은 2020년 상반기에만 1억 5백만 개의 동영상을 삭제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소셜미디어에 대한 압박은 증가하고 있다. 구글은 2019년 미국 정부로부터 3만 건에 이르는 콘텐츠 삭제 요청을 받았는데, 10년 전에는 이런 요청이 수천 건에 불과했다. 페이스북도 같은 해 3만 3,600건의 콘텐츠를 정부의 요청에 따라 삭제했다. 유럽재판소는 2019년 유럽연합 국가들이 페이스북에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 가입자의 콘텐츠를 제거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소셜미디어 기업에 더 많은 의무를 부과하는 ‘디지털 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소셜미디어에서 표현의 자유의 공간은 점점 축소되고 있다.

정부나 규제 기관이 믿을 만한 곳이라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다. 일단 도입된 규제는 수정이나 개선 과정에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소셜미디어에 대한 규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통되는 표현물의 양은 방대하고 내용은 복잡하기 때문에 자율규제만으로는 인격권 침해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 인격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자의적이고 차별적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소셜미디어를 인격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관용의 장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셜미디어 기업과 이용자(혹은 이용자를 대표하는 시민단체), 그리고 정부가 서로 협력해야 한다. 자율규제의 한계 못지않게 정부의 일방적 규제 의 폐해 또한 크기 때문이다. 진보-보수 진영의 대립이 치열했던 대통령 선거가 끝난 시점이 이런 논의를 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다. 정치권과 정부, 법원, 검찰, 언론 등 제도적 신뢰 기관의 신뢰도가 열악한 상황인 지금 신뢰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는 사회 통합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